

일련번호	
------	--

기부금영수증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기부자	
성명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
주소(소재지)	

② 기부금 단체	
단 체 명 (지점명)	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 (지점 사업자등록번호 등)
소 재 지 (지점 소재지)	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
* 기부금 단체의 지점(분사무소)이 기부받은 경우, 지점명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.	
③ 기부금 모집처(언론기관 등)	
단 체 명	사업자등록번호
소 재 지	

④ 기부내용						
코 드	구 분 (금전 또는 현물)	연월일	내 용			금 액
			품명	수량	단가	

「소득세법」 제 34 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58 조 · 제 76 조 · 제 88 조의 4 및 「법인세법」 제 24 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신청인	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.	
기부금 수령인	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
작성 방법

1.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「소득세법」 또는 「법인세법」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.

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	코드
「법인세법」 제 24 조제 2 항제 1 호가목(국가 · 지방자치단체), 나목(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)	101
「법인세법」 제 24 조제 2 항제 1 호다목(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)	102
「법인세법」 제 24 조제 2 항제 1 호라목(같은 목에 열거된 사립학교, 비영리 교육재단, 산학협력단 등의 기관(병원은 제외 한다)에 시설비 · 교육비 ·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)	103
「법인세법」 제 24 조제 2 항제 1 호마목(같은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 ·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)	104
「법인세법」 제 24 조제 2 항제 1 호바목[사회복지사업,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·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(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)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· 고시하는 법인]	105
「소득세법」 제 34 조제 2 항제 1 호나목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)	116
「정치자금법」에 따른 정당(후원회, 선거관리위원회 포함)	201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 39 조제 1 항제 1 호가목(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)	401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 39 조제 1 항제 1 호나목(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)	402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 39 조제 1 항제 1 호다목(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「초 · 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, 「평생교육법」 제 31 조제 4 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 33 조제 3 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)	403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 39 조제 1 항제 1 호라목(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법인)	404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 39 조제 1 항제 1 호마목[(종교의 보급,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「민법」 제 32 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(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)]	405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 39 조제 1 항제 1 호바목(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)	406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 39 조제 1 항제 2 호가목(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· 연구비 ·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)	407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 39 조제 1 항제 2 호나목(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)	408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 39 조제 1 항제 2 호다목(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)	409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 39 조제 1 항제 4 호(같은 호 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로 또는 실비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)	410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 39 조제 1 항제 6 호(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)	411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 80 조제 1 항제 2 호(노동조합 등의 회비)	421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 80 조제 1 항제 5 호(공익단체)	422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88 조의 4(우리사주조합)	461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58 조(고향사랑 기부금)	462

2. ❸ 기부금 모집처(언론기관 등)는 방송사, 신문사,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 하며,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.
3. ❹ 기부내용란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.

기부금 구분	코드
「소득세법」 제 34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 24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특례기부금	10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76 조에 따른 기부금	20
「소득세법」 제 34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른 일반기부금(종교단체 기부금 제외), 「법인세법」 제 24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른 일반기부금	40
「소득세법」 제 34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	41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88 조의 4에 따른 기부금	42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58 조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 60 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제외)	43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58 조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 60 조에 따라 특별재난지 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	44
필요경비(손금)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	50

4. ❺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"금전기부"의 경우에는 "금전", "현물기부"의 경우에는 "현물"로 적고,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 만 적습니다. 현물기부 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,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.

기부자	
법인	개인
Max(장부가액,시가)	Max(장부가액,시가)
장부가액	

기부받는

구 분

공익법인

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시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 * *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,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:개인의 최초 취득가액